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제안연월일 : 2024. 11.

제 안 자 : 국회운영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번 호

연 번	의안명	대표발의자	발의일	경 과
1)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718호)	정청래의원	2024.6.20.	제417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4.8.27.)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제418회국 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 (2024.9.9.) 소위회부
2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756호)	김용민의원	2024.6.20.	제417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4.8.27.)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제418회국 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 (2024.9.9.) 소위회부
3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911호)	박주민의원	2024.6.25.	제417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4.8.27.)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제418회국 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 (2024.9.9.) 소위회부
4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1119호)	조승래의원	2024.6.28.	제417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4.8.27.)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제418회국 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 (2024.9.9.) 소위회부

연 번	의안명	대표발의자	발의일	경 과
(5)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1459호)	민형배의원	2024.7.8.	제417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4.8.27.)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제418회국 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 (2024.9.9.) 소위회부
6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234호)	신정훈의원	2024.7.25.	제417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4.8.27.)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제418회국 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 (2024.9.9.) 소위회부
7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3425호)	김병기의원	2024.8.30.	제418회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2024.9.25.)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426호)	김병기의원	2024.8.30.	제418회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2024.9.25.)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9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3450호)	정청래의원	2024.8.30.	제418회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2024.9.25.)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10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3905호)	조승래의원	2024.9.11.	제418회국회(정기회) 제4차 전체회의(2024.10.16.)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가.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차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2024.10.28.)에서 위 10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각각의 법률안을 본회 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 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나. 제418회국회(정기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2024.10.31.)에서 국회 운영개선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10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가 마련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상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만 동행명령을 할 수 있어,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마찬가지로 증인의 출석요구가 가능한 안건심의나 청문회의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 대하여 동행명령을 할 수 없는 상황임.

현행법은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보고와 서류등의 제출 요구를 받거나, 증인·참고인으로서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개인정보보호나 영업비밀보호 등을 이유로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보고나 서류등의 제출 요구 또는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 요구를 하는 경우, 해당자나 기관 의 장에게 「민사소송법」을 준용하여 요구서를 송달하도록 하고 있 는데, 현실적으로 서류등의 제출 요구는 국회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국회로부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 등이 신체적·물리적·공간적 사유 등으로 부득이하게 국회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원격출석하여 증언 등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법에 따른 위증 등의 최 등에 대한 고발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고발이든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고발이든 증인·감정인 등을 조사한 위원회가 존속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있어,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등과 같이 활동기간이 정해져 있는 특별위원회의 경우에는 그 활동기한이 종료된 이후에 증인 등의 위증 등의혐의가 드러나더라도 고발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현행법상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방해한 자, 허위로 보고하거나 허위의 서류등을 제출한 자, 제출 요구받은 서류등을 고의로 파기·은 닉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보고 또는 서류등 제출 요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출석요구서 송달을 위한 정보제공 요구를 받고도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제공하지 아니하여 출석요구서 송달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회로부터 서류등의 제출 요구를 받거나 증인·참고인으로서 출

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 개인정보보호 또는 영업비밀보호 등의 이유로 거부할 수 없도록 명시함(안 제2조).

- 나. 정부·행정기관 등에 대한 서류등 제출 요구서를 전자시스템을 이용하여 송달할 수 있도록 하고, 증인·감정인·참고인이 질병, 부상, 해외 체류 등의 사유로 출석할 장소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원격출석할 수 있도록함(안 제5조제7항 및 제10항 신설).
- 다. 동행명령 대상 증인의 범위를 현행 '국정감사·국정조사'에서 '중 요한 안건심사 및 청문회'까지 확대함(안 제6조제1항).
- 라.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방해한 자, 허위로 보고하거나 허위의 서류등을 제출한 자, 제출 요구받은 서류등을 고의로 파기·은닉한 자, 요구서의 송달을 위하여 정보제공을 요구받고도 해당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함(안 제12조).
- 마. 위원회의 활동기한 종료로 위증 등의 죄에 대하여 고발할 위원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활동기한이 종료된 위원회의 위원이었던 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라 고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4항 신설).

법률 제 호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따라야 한다"를 "따라야 하며, 개인정보보호 또는 영업비밀보호 등의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로 한다.

제5조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요구서 중 서류등의 제출 요구서는 송달받을 자가 전자시스템을 이용하여 송달받기로 미리 동의하는 경우 그 이후부터 전자시스템을 이용하여 송달할 수 있다. 이 경우서류등의 제출 요구서를 전자시스템에서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 ① 제1항에 따라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감정인·참고인은 질병, 부상, 해외 체류 등의 사유로 제4항에 따른 출석할 장소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원격출석(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장소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출석하는 것을 말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원격출석한 증인·감정인·참고인은 그 출석할 장소에 직접 출석하여 선서 및 증언·감정·진술한 것으로 본다.

제6조제1항 중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중요한 안건심사, 국정감사 나 국정조사 또는 청문회"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자"를 "제5조제8항에 따라 정보제공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정보를 같은 조 제5항에따른 송달기한 전까지 제공하지 아니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기통신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 2.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
- 3.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 요구를 거절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방해한 자
- 4.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
- 5. 증인 · 감정인 · 참고인의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자
- ③ 정당한 이유 없이 허위로 보고하거나 허위의 서류등을 제출한자, 제출 요구받은 서류등을 고의로 파기하거나 은닉한 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4항"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활동기한이 종료되어 제 14조제1항 본문의 죄에 대하여 고발할 위원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활동기한이 종료된 위원회의 위원이었던 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라 그 의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조제10항의 개정규정 중 본회의와 관련된 부분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제5조 및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보고나 서류등의 제출 요구를 받거나, 증인·참고인으로서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2조(증인출석 등의 의무) -----제2조(증인출석 등의 의무) 국회 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 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보고 와 서류 및 해당 기관이 보유 한 사진 · 영상물(이하 "서류등" 이라 한다)의 제출 요구를 받 거나, 증인 · 참고인으로서 출석 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때에 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 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 에 따라야 한다. ---따라야 하며, 개인정보보호 또는 영업비밀보호 등의 이유 로 거부할 수 없다. 제5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등) ① 제5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등) ① ~ ⑥ (생 략)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신 설> 의 요구서 중 서류등의 제출 요구서는 송달받을 자가 전자 시스템을 이용하여 송달받기로 미리 동의하는 경우 그 이후부 터 전자시스템을 이용하여 송 달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등 (7)・(8) (생 략)

<신 설>

제6조(증인에 대한 동행명령) ① 제6조(증인에 대한 동행명령) ①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 의 제출 요구서를 전자시스템 에서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 로 본다.
- 8·9 (현행 제7항 및 제8항 과 같음)
- ⑩ 제1항에 따라 출석을 요구 받은 증인 · 감정인 · 참고인은 질병, 부상, 해외 체류 등의 사 유로 제4항에 따른 출석할 장 소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 우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 가를 받아 원격출석(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 치가 갖추어진 장소에서 정보 통신망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출석하는 것을 말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원격출석한 증인 · 감정인 · 참고인은 그 출 석할 장소에 직접 출석하여 선 서 및 증언·감정·진술한 것 으로 본다.

중요한 안건심사,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또는 청문회-----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하여 지 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 령할 수 있다.

② ~ ⑦ (생 략)

제12조(불출석 등의 죄)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 명을 회피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u>신</u>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_
	2	~	7	(현	행과	· 같	음)			
제	123	조(-	불출	·석	등의	조) (1		
					<u>t</u>	가음	. 2	<u>}</u>	호.	의
	어!	느	하니	 	해	당히	는	වි	당위·	를
	<u>한</u>	ス	<u>}는</u> -							

- 1.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 2.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
- 3.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 요

 구를 거절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방해한 자
- 4.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
- 5.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자

정인 · 참고인의 출석을 방해하 거나 검증을 방해한 자에 대하 여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 설>

제15조(고발) ① ~ ③ (생 략)

<신 설>

②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감 ② 제5조제8항에 따라 정보제 공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정보를 같은 조 제5 항에 따른 송달기한 전까지 제 공하지 아니한 관계 행정기관 의 장 또는 전기통신사업자---

> ③ 정당한 이유 없이 허위로 보고하거나 허위의 서류등을 제출한 자, 제출 요구받은 서류 등을 고의로 파기하거나 은닉 한 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조(고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 고 위원회의 활동기한이 종료 되어 제14조제1항 본문의 죄에 대하여 고발할 위원회가 불분 명한 경우에는 활동기한이 종 료된 위원회의 위원이었던 의 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 라 그 의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다.

<u>④</u> <u>제1항</u>에 따른 고발이 있는 <u>⑤</u> <u>제1</u>항 및 제4항-----

경우에는 검사는 고발장이 접 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 사를 종결하여야 하며, 검찰총 장은 지체 없이 그 처분결과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